

정부의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배원기

공인회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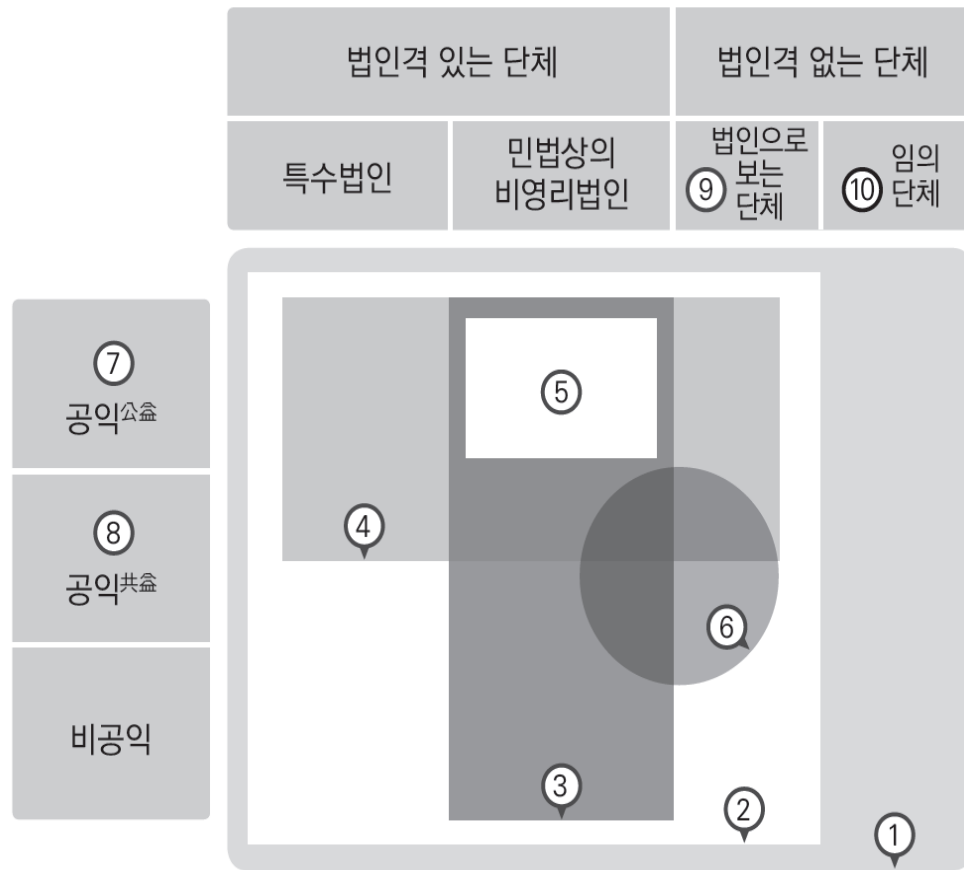
(신한회계법인 고문/ 홍익대 대학원 교수)

2021. 9.15.

0. 들어가는 글 - 퀴즈

- K스포츠.미르재단, 어금니아빠, 새희망씨앗, 정의연대, 정대협
의 공통점은?
- 시민단체의 법적형태는?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법적형태는?
- 이승만 학당의 법인형태는? 비영리법인? Vs. 영리법인?

0. 우리나라의 여러 법령에 따른 비영리단체의 범위 비교



- ① 광의의 비영리단체
- ②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 ③ 민법상 비영리법인
-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
- 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 ⑥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상 비영리 민간단체(시민단체 등)
- ⑦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종교단체,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등
- ⑧ 특정다수를 위한 공익 - 각종 협회 등, 협동조합 등
- ⑨ 종교단체, 공동주택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재개발조합 등
- ⑩ 동창회, 서클, 동아리 등

출처: 비영리단체의 바람직한 운영원칙, 배원기 동아일보사 (2020)

0.1. 참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사법령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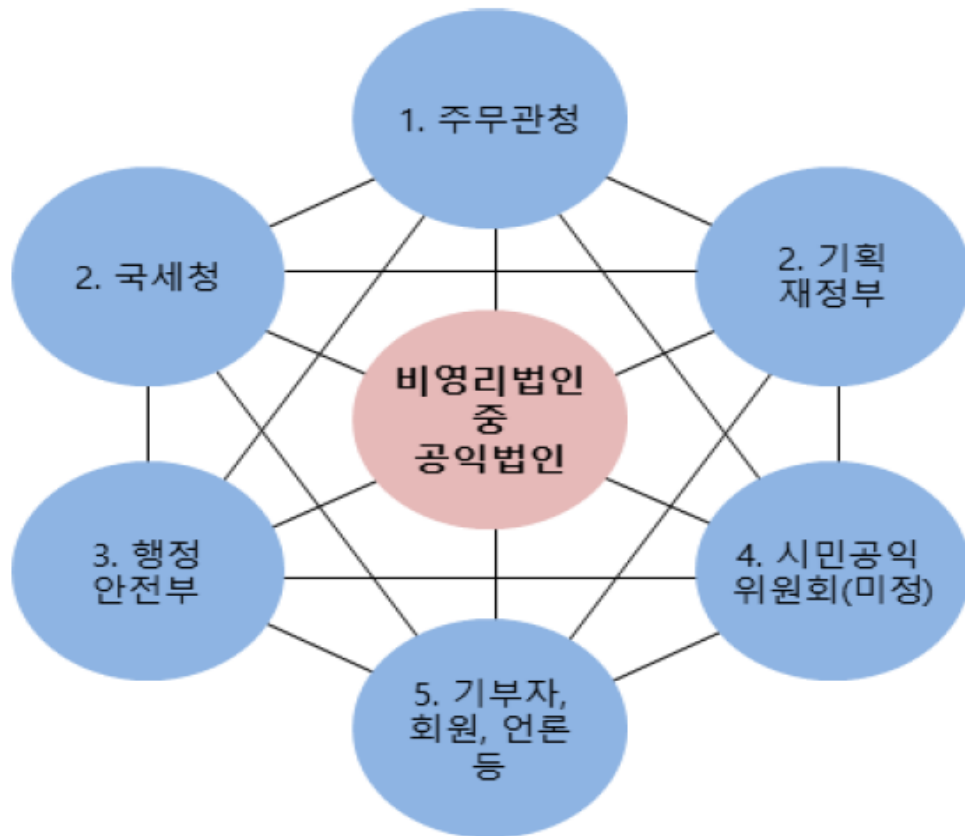
법률 이름	일본	우리나라
민법상의 공익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1896년	1960년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75년
사립학교법	1949년	1963년
의료법인법	1950년	1973년
사회복지법인법	1951년	1970년
종교법인법	1951년	

1. 정부 안의 주요 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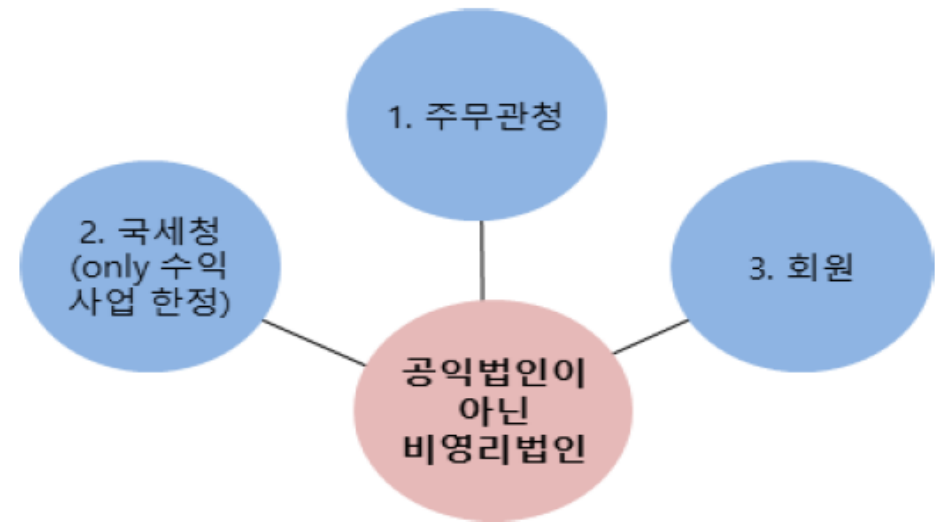
- 명칭의 변경: 공익법인 → **시민**공익법인 ↔ 참고: 세법상의 '공익법인' 과 차이가 있음
- 법무부 산하에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
-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권' 은 그대로 나누고, 신설된 **시민**공익위원회가 공익을 '**인정**'함
- 약 2만6천개의 비영리법인 및 특수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중, 공익법인법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과 일부 사회복지법인, 약3,500여개만 시민공익위가 관리,
- 시민공익법인의 **설립허가**는 지금과 동일하게 각 주무관청, '인정' 후 시민공익위원회로 이관
- 나머지는 현행과 동일: 시민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각 주무관청 관할

2. 공익법인과 비공익비영리법인(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 기관의 차이

<그림1: 공익법인의 관리감독>



<그림2: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



출처: 조세재정연구원, 변영선 "비영리법인 활성화를 위한 관리감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 2021.9.

3. 지금까지의 경과

17. 9. - 18.2.	연구용역 실시, 해외 입법 사례 수집 및 간담회 개최
18. 3. - 18.7.	법무부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T/F' 운영
18. 9.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성안
18.12.	전부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진행
19. 2.- 19.12.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총리실, BH 시민사회참여비서관 등이 참여한 부처 회의 진행, 재 입안 보고
20. 1. -20.9.	관계부처 협의, 시민사회 의견 청취 및 최종안 보완
20. 10. -20.9.	입법예고
21. 7.30.	정부안 국회 제출

4. 정부안 이외에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개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
-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1건 (윤호중 의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건
- 총41건 발의

- 2017. 8.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대표발의 (회기종료로 폐기)
- 2020. 6. 10.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하 '윤호중안') 발의- 기존 공익법인법
폐지

5. 국회에 제출된 공익법인법 개정안 (10건)

계 계류의안 처 처리의안

• 페이지당 결과수 10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주요내용	심사진행상태
2112053	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의원 등 12인)	의원	2021-08-13				소관위접수
2111832	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2021-07-30				소관위접수
2108297	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의원	2021-02-25				소관위접수
2104081	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의원 등 11인)	의원	2020-09-21				소관위접수
2101136	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	2020-06-29				소관위심사
2101125	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	2020-06-29				소관위심사
2100576	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의원 등 10인)	의원	2020-06-16				소관위심사
2100573	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의원 등 11인)	의원	2020-06-16				소관위심사
2100313	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의원	2020-06-10				소관위심사
2100231	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24인)	의원	2020-06-05				소관위심사

2100231
oft Edge

6.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관련 입법안 (3건)

계 계류의안 처 처리의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의결일
2111958	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서영교의원등10인)	의원	2021-08-09	
2108089	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의원	2021-02-15	
2107300	계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의원	2021-01-11	

7. 정부 개정안의 설립허가 및 공익인정

- 현행 민법 제32조에 따른, 각 주무관청의 '허가'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그대로
- 공익법인 인정을 받으려면, 공익법인법에 따라 시민공익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함.
- 신설공익법인: 설립허가는 주무관청 그 뒤 공익법인 **인정** 및 관리는 시민공익위원회
- 기존공익법인: 주무관청에서 시민공익위원회로 이관, 시행일후 3년 이내에 시민공익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 공익법인총괄기구의 신설이 아니라 옥상옥(屋上屋)
- 개선이 아니라 개악(改惡)

8. '인정'이란?

- 인정이란?
- 강학상 '인가'와 유사
-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행위에 대해 그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
- 허가보다 완화된 심사기준

- 일본: 2008년부터 공익법인 인정이란 용어를 사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 공익여부 판정은 '인정'
- 설립보다 공익인정이 더 중요한데, 설립은 '**허가**'로 하고, 공익판정은 '**인정**'(?)
- 모순이 아닌가?

9. 정부 안에 의한 시민 시민공익위원회 관리대상

2017년 6월 기준

- 민법상 비영리법인 20,414개
- 공익법인 3,407개
- 특수법인 1,775개
- 총 25,596개
- (비영리민간단체: 약 15,000개)

정부안

- 기존 3,407개의 공익법인 + 공익법인으로 전환유인이 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공익법인으로 인정을 신청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곳 = 총 3,500여개의 공익법인
- 기존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만 주무관청 관할에서 시민공익위원회 관할로 이관하는 형태 + 사회복지법인 일부
- 공익신탁법 개정과 유사

10.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보단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 더 문제

- K스포츠·미르재단, 어금니아빠, 새희망씨앗, 정의연대, 정대협 ->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이 아니라,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임.
- **견제받지 않는 시민단체: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법인법만 개정하면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음
- **민법과 기부금품법, 비영리단체 지원법을 동시에 개정하면서, 통합해야**
- 관련 세법도 동시에 개정해야
- 최근 시민단체 및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도 동시에 검토해야
-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자유화하고,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법인만 정부가 감독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10.1 참고: 법무부 설명, 공익법인법만 개정해서 문제 해결(?)

정부 설명

- 주무관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하여 공익법인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특혜성 공익법인이 설립('K스포츠' 나 '미르재단' 등)되거나,
- 공익법인의 실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공익법인 제도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의문 내지 비판

- 공익법인법만 개정되면 해결(?)
- 각 주무관청이 가지고 있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문제점을 해결될 수 없음을 간과

10.1. 비영리법인제도에 관한 독일,일본의 영향

-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계에서는 국가가 공익(公益)의 실현을 독점, 민간공익단체(“공익단체”)를 국가권력에 대한 장애물로 여김
- 공익단체를 **국가의 (잠재적인) 정치적 라이벌로 인식** → **허가제**를 비롯한 다양한 관리수단으로 통제
- 독일 및 일본의 영향을 받은 잔재가 특히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허가주의로 존속하고 있음.
→ 비영리법인의 허가제도는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조항이라는 비판도..
- **정부(법무부) 2011. 11.(제18대 국회) 및 2014.10.24.(제19대국회)에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개정안 제출 (허가주의 → 인가주의):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 → 법무부는 민법개정을 어려워 함(?)
- **일본**은 19세기 말 도입했던 제도를 2006년 개혁함: (공익법인은 인증, 그외 비영리법인은 법률요건만 갖추면 법인설립가능한 준칙주의 도입) → 제도개혁의 보이지 않는 목표: 공익법인조세감면 축소
- **미국**: 법인설립에 대한 제한은 없음(결사의 자유) → 조세혜택은 국세청(IRS) 심사 및 관리

10.2 서부지검 20.9.14. 윤미향 기소 보도자료(1)

2. 단체 외계처리 등 관련 고발

순번	고발 요지	불기소이유
1	보조금 및 기부금 수입·지출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허위공시하거나 공시누락하는 방법으로 유용 (공시상 '맥주집 과다 지출', '16~'20년 국고보조금 8억 2,000만원 누락' 등)	- 공시 누락 등 부실공시가 상당히 있었으나, 확인결과 의혹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정상 회계 처리는 되어있고 지출에도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 국세청 홈택스 허위공시 및 누락에 대하여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없음
2	정대협·정의연이 같은 사업으로 보조금을 각각 받는 등 보조금 중복·과다지급 받음	정대협·정의연의 보조금 사업내용 분석결과,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다르거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수령하는 보조금인 점 등에 비추어 보조금 중복·과다 지급으로 보기 어려움
3	정의연의 '17~'19년 기부금 수입 약 22억 1,900만원 중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한 약 9억 1,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3억 800만원을 유용하여 업무상횡령	정의연 기부금 수입 사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기림사업, 교육·문화·장학 사업 등 사업 내용이 다양하므로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 외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음
4	주무관청인 외교부 및 인권위에 기부금 및 보조금 수입 및 지출 내역 거짓 보고	주무관청에 후원금 수입·지출을 일부 누락 하여 보고하였으나,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어서 공익법인법을 적용하여 처벌 할 수 없음
5	'20. 4.경 안성침터를 첫 호가가 6억원대임에도, 4억 2,000만원에 헐값으로 매각하여 업무상배임	'20. 8. 7. 기준 시세 감정평가 금액이 4억 1,000여만원인 점, 매수자가 없어 약 4년간 매각이 지연된 점 등 고려할 때 배임이라 보기 어려움
6	'11~'12년경 안성침터 불법 증축	건축법 공소시효 5년이 도과하여 공소권없음

10.2.서부지검 20.9.14. 윤미향 기소 보도자료(2)

● 공익법인의 부실 회계공시에 대한 처벌규정 입법화 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기부자명단 포함) 공시(이른바 '국세청 홈택스 공시')는 같은 법 제50조의 3, 시행령 43조의 3이 근거인데, 공시 내용이 거짓이거나 부실해도 처벌할 근거규정이 없음

※ 정대협, 정의연의 홈택스 공시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달라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부실공시는 처벌규정이 없는 점에 기인하는 점도 있다고 보임

⇒ 기부금을 모집하여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각종 활동을 하는 법인들의 자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① 공익법인법의 적용 확대,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

V

향후 계획

-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

11. 시민공익위원회의 소속 (위상)

- 윤호중안: 국무총리 소속
- 정부(안): 법무부 장관 소속,

- 정부안: 공익신탁제도의 법무부 집중과 유사
- 최소한 국무총리 산하로 해야
- 더 바람직한 것은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 국가 인권위원회 방식(독립행정기관)

12. 시민공익위원회 위원구성

윤호증안

-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
-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정부안

-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
- 위원장: 정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1명
- 상임위원: 위원장 추천으로 정부장관 임명 1명
-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명
- 국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 7명

12.1. 참고: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상의 시민사회 위원회

- 기능: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조정
- 국무총리 소속
- 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 간사위원 1명을 포함한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 다른 위원장은 민간위원중 호선
- 위원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
- 민간위원: 시민사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2.2. 바람직한 시민공익위원회 구성 방식

국가인권위원회 구성방식

- 인권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국회에서 4명을 선출
-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
- 입법·사법·행정 중 어느 국가권력 기관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

일본 및 영국

- 일본의 공익인정위원회:
변호사, 회계사 및 비영리 전문가로만 구성
- 영국의 Charity Commission:
내무부장관이 위원 임명하나,
지시할 수 없음. – 독립성 강조

13. 예산 및 결산서 제출시기 등

정부 개정안

- 공익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서류 뒷장)
-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은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안

- 사립학교 등의 사례 벤치마킹
- 2개월 이내에 결산 가능? 비영리법인들은 늦추어 달라고 요청중, 3월 내지 4월로 연장해야
- 공인회계사(?) → 감사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감사증명서 → 회계감사보고서
- 적용회계기준은? 시민공익위에서 별도 제정(?)

14. 예산 결산 서류

정부 개정안(신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 지출 예산서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 · 지출 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모집 사항,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의문 내지 제안

- 단식부기(?) 결산서류가 아닌지?
- 세법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서로 달라 각 법령에 따라 각각 작성하는 불편 → 일원화해야
- 일본의 사례: 2004 공익법인 회계기준(주무관청 감독용 회계로부터 국민의 이해를 전제로 한 회계로의 전환)개정후, 주무관청 제출용과 일반공개용 보고서를 통일함.
- 호주 등 다른 외국의 사례
- 복식부기 재무제표로 해야
- 재무제표 종류의 명시 필요

15. 기부금품 모집 신고 등

정부

- 공익법인은 시민공익위원회에 신고
- 기타 비영리법인 등은 현행과 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2018.12. 행정안전부 의견

- 기부금품을 두고 시민공익위원회(공익법인)와 주무관청(잔여 비영리법인)이 각각 법률 등을 운영할 경우 충돌 가능성
- 시민공익법인과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 간 편차 발생 우려

16. 시민공익법인 명칭사용금지

- (현행) 공익법인 명칭사용금지에 대한 규정 없음
- (정부안)→ 이 법에 따른 시민공익법인이 아닌 자는 시민공익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시민공익위원회의 '인정' 후, 명칭을 시민공익법인으로 변경해야 하나? – 규정은 없음.
-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은 각각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공익법인으로만 표시하면, 사단법인형태인지 재단법인 형태인지의 구분이 어려움
- 참고: 일본은 공익 인정후,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17. 추가해야 할 사항- 이사 감사의 자격 추가

미국

- (미국) 이어나 감사 중에 **재무적 이해 능력 (Financial Literacy)**을 가진 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 회계사 등

일본

- (일본)일본의 공익법인의 요건 중 하나 : 공익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회계적 및 기술적 능력을 지닐 것
- 외부회계감사를 받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입 또는 비용이 1억엔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회계사나 세무사를 감사로,
- 그 미만의 법인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의 회계사무를 담당할 사람이 감사를 맡도록 해야 공익인정 가능

19. 기본재산제도의 개선

- 비영리법인 설립할 때 최소한의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 → 기본재산
- 민법에는 기본재산, 보통재산의 제도가 없음.
- 1975년 공익법인법 제정하면서, 일본의 행정지도사항(기본재산, 보통재산)을 공익법인법에서 규정함. – 미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음.
- 이후,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나 기타 다른 비영리법인의 허가에서 공익법인법의 기본재산, 보통재산의 개념을 차용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음.
- 기본재산, 보통재산을 일종의 단식부기 개념
- 일본은 2006년 공익3법개정에서, 기본재산 개념을 없애고, 재단법인에 한하여, 최소순자산의 개념을 도입 (복식부기 개념)
- 정부안에서는 현행 기본재산제도를 그대로 답습 → 일본의 개혁과 같이 기본재산 제도를 없애서, 영리법인의 자본금 개념과 유사한 순자산 제도로 변경해야 함.

총평

- 개악(改惡)이 아닐까? 부처이기주의의 발상(?)
- **법무부 단독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 공익법인법만 개정해서는, 윤 미향 사태와 같은 사례를 처벌할 수 없음. - 공익법인법뿐만 아니라, **민법의 비영리법인 관련규정도 동시에 개정해야.. 기부금품법(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관련 세법도 함께 개정되어야..**
- 공익법인은 인가주의로, 기타 비영리법인은 준칙주위 또는 등록주의(요건만 갖추면 자동설립 가능하도록)로 변경해야
- 민법의 관련규정까지 개정하기 전에는, 총리실 산하에 부처간 협의체를 신설해서, 부처간에 상이한 허가 절차를 통일해야
- (다른 대안) 현재같이 관련 법령이 따로 놀면, 미국과 같이 세법에 관련 규정을 모두 넣는 방안, 국세청에 비영리 관련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

참고문헌/자료

- 김진우,이지민; 민간공익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체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영국법으로 부터의 시사점 (2018)
- 배원기; 일본의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2)
- 배원기; 비영리단체의 바람직한 운영원칙, 배원기 동아일보사 (2020)
- 조세재정연구원, 변영선 “비영리법인 활성화를 위한 관리감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 2021.8.
- 법무부;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예고 (2021.10.21. 공고)

강연자 경력

- 대학교 4학년 때인 1977년 제11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197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Kim & Chang 법률사무소, KPMG삼정회계법인 등에서 회계사로서 활동하다가 2010년 3월부터 홍익대학교 대학원 교수로서 비영리 회계 등을 강의하고 있음.
- 2005년경부터 몇 군데 비영리단체의 비상근 감사로 섬기면서, 우리나라 비영리조직 관련 법규나 회계관련 규정중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인식한 후, 연구나 저술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비영리 회계제도의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기획재정부 산하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한국조세연구원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자문위원, 재단법인 한국가이드 스타 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음.
- 비영리 관련 논문으로서는 『일본의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혁과 시사점(비영리학회, 2012)』, 저서로서는 『비영리법인(NPO)의 회계 및 세무입문(신영사, 2019)』, 『비영리단체(NPO)의 바람직한 운영원칙(동아일보사, 2020)』이 있음. 저서 이외에, 2017년부터 크리스찬 투데이,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가이드스타,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 비영리 회계에 관한 칼럼을 게재하고 있음.

Thanks

Q & A

배원기

(02-779-3247 / wkpae@rsmkr.kr)